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30694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나30694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2. 14 선고 2020가단1538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형

변론종결 2022. 11. 17.

판결선고 2023. 1.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2. 14. 선고 2020가단1538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2.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10,325,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0,32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2.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7. 4. 접수 제363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2.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115,325,56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15,32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2. 체결된 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7. 4. 접수 제363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산분할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무효이고,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전부 또는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115,325,56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원고에게 115,325,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제3의 가.항을 인용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나) C의 채무초과 상태

(1)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C의 재산상황

갑 제2, 5호증, 을 제3, 5 내지 8,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C의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으므로, C는 소극재산(합계 1,740,041,096원)이
적극재산(합계 1,736,429,48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분	내용	금액	비고
적극 재산	경남 산청군 J 전 2.327㎡	16,000,000원	2021. 4. 27.자 매매가액
	울산 동구 K아파트 L호	321,900,000원	다툼 없음
	울산 북구 M 전 273㎡	41,223,000원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따른

소극 재산	울산 북구 N 일아 1,408㎡	56,320,000원	2019. 6. 7.자
	울산 울주군 O 지상 5층 건물	880,335,360원	감정평가액으로서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마한가지일 것으로 추정됨
	이 사건 각 부동산	420,651,120원	을 제8호증
	합계	1,736,429,480원	
	위 K아파트 L호에 관한 Q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28,000,000원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대출금액은 228,000,000원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자 등의 납입지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위 K아파트 L호에 관한 R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95,000,000원	다툼 없음
	울산 북구 M 전 273㎡, N 일아 1,408㎡에 관한 R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0,000,000원	채권최고액과 동일(실제 피담보채무액 자료 없음)
소극 재산	울산 울주군 O 지상 5층 건물에 관한 주식회사 S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840,000,000원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초대출금은 840,000,000원이고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자 등의 납입지체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I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90,000,000원	을 제8호증
	원고에 대한 채무	237,041,096원	갑 제2호증
	합계	1,740,041,096원	

(2) C가 2014. 9. 26. D에게 지급한 310,000,000원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C가 2014. 9. 26. D에게 지급한 310,000,000원은 울산 P 대 4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분양대금 명목이므로, C가 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C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채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310,000,0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8, 6, 11, 20, 2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2014. 9. 26. D에게 지급한 310,000,000원 상당의 채권은 C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가 2014. 9. 26. D에게 3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대금이나 분양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C는 당시 D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이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② C가 위 금원을 지급한 이후인 2015. 6. 17. C와 D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작성된 분양계약서(을 제11호증)에는 분양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분양대금 중 310,000,000원이 이미 납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C는 2018.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X 주식회사와 매매대금을 314,518,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S은행으로부터 249,000,000원을 대출받아 X 주식회사에 지급하고, 잔금에 해당하는 31,452,000원을 X 주식회사에 송금하였다. 2018. 8.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S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98,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거래가액이 314,518,000원으로登記되어 있다.

④ 설령 C가 D에게 지급한 310,000,000원 전부 또는 그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대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C가 이후 314,518,000원의 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C가 D에 대해 310,000,000원 상당의 채권 또는 재산권을 가진다거나 그러한 채권 또는 재산권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재산 가치 중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나아가 이 사건 재산분할로 인하여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 소유의 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C의 적극재산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경남 산청군 J 전 2,327㎡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상회하는 상태였다. 또한 경남 산청군 J 전 2,327㎡의 경우 C가 1990. 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C의 특유재산으로서 피고가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 증식에 협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사실상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보인다.

② C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기간 동안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얻었다거나 C 소유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부담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다만 C와 피고는 36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피고는 적어도 가사에 종사하고 C를 내조하는 등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와 피고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비율은 C 50%, 피고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그런데 이 사건 재산분할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반면(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더라도 그 가액이 230,651,120원 상당이다) C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재산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러한 재산분할 결과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C의 외도와 부양의무를 저버린 유기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C로부터 위자료 명목 등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로서 취득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함에 있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당시의 그것보다 현실적으로 증대되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모두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41389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산분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420,651,12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5. 3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0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당심 변론종결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은 당심 변론종결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420,651,12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200,000,000원을 공제한 220,651,120원 중 앞서 본 재산분할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인 50%를 초과하는 한도, 즉 110,325,560원(= 220,651,120원 × 50%)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10,32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 중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이경한, 판사 박소영

별지